

요식 서비스 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 및 식품경영허가증 통합·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2016]12 호

2016-02-03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및 각 직속기관 귀중.

정부기관 간소화 및 권한 이양(簡政放權), 방임 및 감독 (放管結合), 서비스 우수화 협동추진의 편성을 철저히 실행하여 요식업체에 대한 증서 중복발급, 중복감독관리를 감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동시에 감독관리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一. 요식 서비스 장소 공공장소 위생허가증의 취소

지방 위생부문이 발급하는 음식점, 카페, 주점, 찻집 등 4 종류의 공공장소에 대한 위생허가증을 취소하고, 식품안전허가 관련 내용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발급하는 식품경영허가증에 통합시키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단독으로 허가하고 일괄 관리감독한다.

二. 식품경영허가증 관리의 규범화와 개선

요식 서비스 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을 취소한 후, 각 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요식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구체화하고, 식품경영허가증 심사비준 및 발급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며, 법률·규칙·표준에 따라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가이드를 작성하며, 내부심사 세칙을 제정하고,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하며, 심사비준 기한을 단축하며, 처리기한 승낙제도를 실행하여 식품경영허가증 심사비준 및 발급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三. 요식 서비스 장소에 대한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 강화

지방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요식 서비스 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방식을 개선하며,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샘플추출검사제도, 책임추적제도, 블랙리스트 제도 및 시장퇴출 제도 등을 보완함으로써 요식 서비스 장소의 식품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전염병 발생 및 잠재위험에 관한 보고를 접한 후, 즉시 위생부문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생부문은 전염병 관련 발생상황을 주동적으로 모니터링·수집분석·조사·사실확인 하여야 하고, 전염병 예방치료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예방조치 및 대응조치 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위생계생위,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각 지의 통합·조정 업무 완성기한을 명확히 하여 연관된 부문규장 등을 정리 및 수정하여야 한다. 국무원판공청은 즉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각 지가 소정 기한 내에 개혁 요구사항을 실행하도록 독촉한다.

이 결정은 인쇄발부일로부터 시행하며, 기존 규정에 이 결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무원

2016년 2월 3일